

|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|--|
| 문서번호 | ○○실-4808 | | ★차장 | 감사1부장 | 감사실장 | 감사 | |
| 보존기간 | 준영구 | | | | | | |
| 결재일자 | 2018. 10. 26 | | 협 조 | | | | |
| 공개여부 | 비공개(5) | | | | | | |

지적기준점 관리 실태 성과감사 결과 보고

2018. 10.

목 차

| | |
|--|---|
| I. 감사실시 개요 | 1 |
| 1. 감사배경 및 목적 | 1 |
| 2. 감사근거 및 대상기관 | 1 |
| 3. 감사 중점사항 | 1 |
| 4. 감사기간 및 인원 | 1 |
| | |
| II. 성과감사 결과 | 2 |
| 1.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등록에 관한 사항 | 2 |
| 2.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에 따른 재료비 산출에 관한 사항 | 3 |
| | |
| III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| 4 |
| 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| 4 |
| 1-1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| 5 |
| 1-2. 제도개선 처분요구 명세 | 5 |
| | |
| IV. 기타사항 | 5 |

I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이번 성과감사는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위탁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의 적정성과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운영 현황, 지적기준점 매설 재료비 산출 내역 등 지적기준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지적기준점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감사근거 및 대상 범위

「감사기준시행세칙」 제58조(성과감사 목적) 및 제59조(성과감사 대상)에 근거하였고, ○○○○○○공사 본사 ◇◇◇◇실과 각 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관리 실태에 대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다.

3. 감사 중점사항

이번 성과감사는 ○○○○○○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2738호, 2014. 6. 3. 일부개정, 2015. 6. 4. 시행)에 의거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조사·관리 추진의 적정성과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,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에 따른 재료비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.

4. 감사기간 및 인원

2018. 9. 17. 부터 같은 해 9. 21. 까지 5일간 5명의 감사인력(연 인원 25명)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.

○ 감사인 : 감사1부장 등 5명(감사1부장, 박○○, 오□□, 최■■■, 김△△)

1.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등록에 관한 사항

○ 감사결과

-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(이하 “COS”라 한다)의 지적측량 업무처리 결산서 ‘지적기준점 현황조사’ 완료 수량과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의 ‘기준점관리 통계’ 기능에 등록된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등록 수량이 [표 1]과 같이 2017년 51,880필, 2018년 9월말 현재 11,916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.

[표 1]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완료수량 및 등록 현황(2017.1. 1. ~ 2018. 9. 30.)

(단위: 필)

| 구 분 | 2017년 | | | 2018년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업무완료량 (결산서) (A) | 기준점 등록 현황 (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) (B) | 증.감 (B-A) | 업무완료량 (결산서) (A) | 기준점 등록 현황 (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) (B) | 증.감 (B-A) |
| 합 계 | 126,693 | 74,813 | -51,880 | 47,538 | 35,622 | -11,916 |
| ▲▲지역본부 | 0 | 0 | 0 | 0 | 2 | 0 |
| ▽▽▽지역본부 | 0 | 129 | 129 | 2,425 | 2,295 | -130 |
| ▶▶지역본부 | 8,048 | 7,725 | -323 | 571 | 0 | -571 |
| ♁♁지역본부 | 13,778 | 6,747 | -7,031 | 7,764 | 9,497 | 1,733 |
| ♠♠지역본부 | 6,284 | 1,598 | -4,686 | 5,392 | 640 | -4,752 |
| ♡♡지역본부 | 16,034 | 11,920 | -4,114 | 0 | 3,568 | 3,568 |
| ▷▷▷지역본부 | 40 | 0 | -40 | 213 | 0 | -213 |
| ♥♥지역본부 | 10,269 | 4,487 | -5,782 | 1,879 | 4,496 | 2,617 |
| ▼▼▼지역본부 | 28,518 | 22,718 | -5,800 | 11,122 | 10,323 | -799 |
| ◀◀◀지역본부 | 23,701 | 10,626 | -13,075 | 7,098 | 1,927 | -5,171 |
| ♣♣지역본부 | 12,521 | 8,861 | -3,660 | 11,074 | 2,874 | -8,200 |
| ♣♣지역본부 | 7,500 | 2 | -7,497 | 0 | 0 | 0 |

- COS의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완료 수량과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의 등록 수량을 일치하도록 하여 기준점 현황조사 통계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.

2.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에 따른 재료비 산출에 관한 사항

○ 감사결과

- 지역본부별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에 따른 재료비 산출 현황을 검토한 결과 [표 2]와 같이 지적삼각점 표석의 재료비는 ◀◀◀◀지역본부 89,120원, ▼▼▼▼지역본부 37,000원으로 52,120원, 지적삼각점 반석은 ▷▷▷▷지역본부 52,500원, ▼▼▼▼지역본부는 23,000원으로 29,500원, 지적삼각보조점 철제(황동)은 ♣♣지역본부 50,000원, ▼▼▼▼지역본부 23,000원으로 27,000원, 지적도근점 철제(황동)은 ▲▲지역본부 17,000원 ◀◀◀◀지역본부 5,030원으로 11,970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하였으며, 각각의 재료비는 최대 52,120원(240.9%), 최저 11,970(295.9%)의 차이가 발생하였다.

[표 2] 2018년 지적기준점 매설에 따른 재료비 산출 현황

(금액단위: 원)

| 기 관 | 지적삼각점 | | 지적삼각보조점 | | 지적도근점 | | 매설업체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| 표석 | 반석 | 표석 | 철제(황동) | 표석 | 철제(황동) | |
| ○○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7,000 | ♣♣♣♣♣클럽 |
| ●●●● | 60,000 | 50,000 | 60,000 | 없음 | 50,000 | 8,000 | 자체매설 |
| ◎◎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6,000 | ♣♣♣♣♣클럽 |
| ◇◇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6,000 | ♣♣♣♣♣클럽 |
| ◆◆ | 57,625 | 44,000 | 57,625 | 39,750 | 57,625 | 15,725 | ◆◆기업 |
| □□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9,100 | ♠♠♠♠♠(주) |
| ■ ■ ■ ■ | 63,000 | 52,500 | 63,000 | 없음 | 63,000 | 15,750 | ♡♡엔지니어링 |
| △△ | 60,000 | 50,000 | 60,000 | 50,000 | 50,000 | 7,273 | ♥♥이엔지 |
| ▲▲▲▲ | 37,000 | 23,000 | 37,000 | 23,000 | 37,000 | 10,000 | ♠♠♠♠♠(주) |
| ▽▽▽▽ | 89,120 | 47,180 | 89,120 | 47,180 | 89,120 | 5,030 | ♣♣♣♣개발㈜ |
| ▼▼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9,000 | ♠♠♠♠♠(주) |
| ◁◁ | 60,000 | 50,000 | 60,000 | 50,000 | 50,000 | 8,000 | 자체매설 |
| 최고, 최저 단가 차액 | 52,120 | 29,500 | 52,120 | 27,000 | 52,120 | 11,970 | |

- 동일업체별 재료비 산출 현황을 검토한 결과 [표 3]과 같이 ♣♣♣♣♣ 클럽의 경우 지적도근점 철회(황동)의 경우 ▲▲지역본부와 ◎◎ 및 ♣♣지역본부의 경우 1,000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하였고, ♠♠♠♠♠♠♠ (주)의 경우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표석은 10,500원,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반석의 경우 20,000원, 지적도근점 철회(황동)의 경우 900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하였으며, ♠♠♠♠♠♠♠(주)의 각각의 재료비가 최대 20,000원(187.0%), 최저 10,500원(132.4%)의 차이가 발생하였다.

[표 3] 2018년 지적기준점 매설에 따른 동일업체별 재료비 산출 현황

(금액단위: 원)

| 매설업체 | 기관 | 지적삼각점 | | 지적삼각보조점 | | 지적도근점 |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표석 | 반석 | 표석 | 철회(황동) | 표석 | 철회(황동) |
| ♣♣♣♣♣ 클럽 | ○○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7,000 |
| | ◎◎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6,000 |
| | ◇◇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6,000 |
| | 증.감 | 0 | 0 | 0 | 0 | 0 | 1,000 |
| ♠♠♠♠♠ ♠♠(주) | □□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9,100 |
| | ▲▲▲▲ | 37,000 | 23,000 | 37,000 | 23,000 | 37,000 | 10,000 |
| | 증.감 | 10,500 | 20,000 | 10,500 | 20,000 | 10,500 | 900 |

-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 용역에 따른 지적기준점 재료비 산출 내역을 지역본부별로 공유하여 재료비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기준점 매설비 산출 내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.

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

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: 건, 명, 원)

| 처분지시 일련번호 | 감사대상기관 (관계기관/부서) | 건 명 | 처분요구 | | | 조치기한 | 감사자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| | | 행정상조치 | 재정상조치(시정) | 신분상조치 | | |
| 2018-37 | ◇◇◇◇실 |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등록 부적정 | 개선 1 | | | 2개월 | 최■■■ |
| 2018-38 | ◇◇◇◇실 |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에 따른 재료비 산출에 관한 사항 | 권고 1 | | | 2개월 | 김△△ |

1-1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

| 제 목 | 처분내역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|
| | 조치양정 | 소속 | 직급 | 성 명 | 관련 지적사항 |
| “해당사항 없음” | | | | | |

1-2. 제도개선 처분요구 명세

| 처분지시 일련번호 | 감사대상기관 (관계기관/부서) | 제 목 | 조치사항 | 감사자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
| 2018-37 | ◇◇◇◇실 |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등록 부적정 |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완료수량과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의 현 황조사 등록수량이 일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. | 최■■■ |

V

기타사항

향후 처리계획

-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
-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및 홈페이지 공시

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부. 끝.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일련번호 | 2018 - 37 | 감사자 | 국토정보직 5급 최■■■ | | 공 개(○) 비공개() |
| 신분상 조치인원 | | 재정상 조치방법 | | 재정상 조치금액 | |
| 수감부서 (처리할 부서) | 본사 ◇◇◇◇실 | 처분요구일자 | 2018. 10. | 회신기일 | 2개월 |

○○○○○○공사 상임감사

개 선 요 구

제 목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등록 부적정
관 계 기 관 ○○○○○○○공사 본사 ◇◇◇◇실
내 용

○○○○○○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서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¹⁾을 개발·운영하고 있다.

위 공사의 ◇◇◇◇실에서는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적 기준점 현황조사에 따른 현장업무수행 지원, 조사 및 측량에 따른 결과 등록 및 검수, 기준점들에 대한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, ‘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시스템 구축 알림²⁾(◇◇◇◇실-1442, 2018. 4. 2.)’에 따라 기간별, 기관별 등록, 현황조사, 검수 실적에 대한 통계 제공 기능을 강화하였고, 지역본부 담당자가 기준점업무 활용시 시스템의 오류사항을 발견할 경우 커뮤니티(질의응답)를 통하여 수정하도록 시달하였다.

1) ‘선진형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(RNS) 운용 알림’(◇◇◇◇실-2518, 2016. 6. 9.)

2)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에 따른 현장업무수행 지원, 조사 및 측량에 따른 결과 등록 및 검수, 기준점들에 대한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

그런데도 위 공사의 각 지역본부에서는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(이하 “COS”라 한다) 지적측량 업무처리 결산서의 ‘지적기준점 현황조사’ 완료 수량과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‘기준점관리 통계’ 기능에 등록된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등록 수량이 [표 1]과 같이 2017년 51,880필, 2018년 9월말 현재 11,916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.

[표 1]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완료 수량 및 등록 수량 현황(2017.1. 1. ~ 2018. 9. 30.)

(단위: 필)

| 구 분 | 2017년 | | | 2018년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업무완료량 (결산서) (A) | 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(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) (B) | 증.감 (B-A) | 업무완료량 (결산서) (A) | 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(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) (B) | 증.감 (B-A) |
| 합 계 | 126,693 | 74,813 | -51,880 | 47,538 | 35,622 | -11,916 |
| ▲▲지역본부 | 0 | 0 | 0 | 0 | 2 | 0 |
| ▽▽▽▽지역본부 | 0 | 129 | 129 | 2,425 | 2,295 | -130 |
| ▶▶지역본부 | 8,048 | 7,725 | -323 | 571 | 0 | -571 |
| ♠♠지역본부 | 13,778 | 6,747 | -7,031 | 7,764 | 9,497 | 1,733 |
| ♣♣지역본부 | 6,284 | 1,598 | -4,686 | 5,392 | 640 | -4,752 |
| ♡♡지역본부 | 16,034 | 11,920 | -4,114 | 0 | 3,568 | 3,568 |
| ▷▷▷▷지역본부 | 40 | 0 | -40 | 213 | 0 | -213 |
| ♥♥지역본부 | 10,269 | 4,487 | -5,782 | 1,879 | 4,496 | 2,617 |
| ▼▼▼▼지역본부 | 28,518 | 22,718 | -5,800 | 11,122 | 10,323 | -799 |
| ◀◀◀◀지역본부 | 23,701 | 10,626 | -13,075 | 7,098 | 1,927 | -5,171 |
| ♁♁지역본부 | 12,521 | 8,861 | -3,660 | 11,074 | 2,874 | -8,200 |
| ♣♣지역본부 | 7,500 | 2 | -7,497 | 0 | 0 | 0 |

※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(COS) 업무 결산서 및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통계 자료 재구성

그러므로 COS의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완료 수량과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의 등록 수량을 일치하도록 하여 기준점 현황조사 통계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.

조치할 사항 ○○○○○○○공사 사장(◇◇◇◇실장)은 지적측량업무지원 시스템(COS) 지적측량 업무처리 결산서의 기준점 현황 조사 완료 수량과 지적 기준점관리시스템 등록 수량이 일치되도록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지역본부에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기준점 등록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(개선)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일련번호 | 2018 - 38 | 감사자 | 국토정보직 5급 최■■■ | | 공 개(○) 비공개() |
| 신분상 조치인원 | | 재정상 조치방법 | | 재정상 조치금액 | |
| 수감부서 (처리할 부서) | 본사 ◇◇◇◇실 | 처분요구일자 | 2018. 10. | 회신기일 | 2개월 |

○○○○○○공사 상임감사

통 보

제 목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에 따른 재료비 산출에 관한 사항

관 계 기 관 ○○○○○○○공사 본사 ◇◇◇◇실

내 용

○○○○○○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적기준점 재료비(표석, 철제 등)를 산출, 적용하여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.

위 공사의 ◇◇◇◇실에서는 ‘2018년 지적측량기준점 등 매설비 산출자료 송부(◇◇◇◇실-317, 2018. 1. 15.)’에서 지적측량기준점 등 매설(설치)에 따른 재료비는 지역별 물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가변동률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실비를 조사하여 산출·적용하도록 시달하였다.

2018년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에 따른 공사의 각 지역본부별 재료비 산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

가. 각 지역본부별 지적기준점 매설에 따른 재료비 산출 현황

위 공사의 각 지역본부별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에 따른 재료비 산출 현황을 검토한 결과 [표 1]과 같이 지적삼각점 표석의 재료비는 ◀◀◀◀지역본부

89,120원, ▼▼▼▼지역본부 37,000원으로 52,120원, 지적삼각점 반석은 ▷▷▷▷ 지역본부 52,500원, ▼▼▼▼지역본부는 23,000원으로 29,500원, 지적삼각보조점 철제(황동)은 ♣♣지역본부 50,000원, ▼▼▼▼지역본부 23,000원으로 27,000원, 지적도근점 철제(황동)은 ▲▲지역본부 17,000원 ◀◀◀◀지역본부 5,030원으로 11,970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하였으며, 각각의 재료비는 최대 52,120원(240.9%), 최저 11,970원(295.9%)의 차이가 발생하였다.

[표 1] 2018년 지적기준점 매설에 따른 재료비 산출 현황

(금액단위: 원)

| 기 관 | 지적삼각점 | | 지적삼각보조점 | | 지적도근점 | | 매설업체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| 표석 | 반석 | 표석 | 철제(황동) | 표석 | 철제(황동) | |
| ○○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7,000 | ♣♣♣♣♣클럽 |
| ●●●● | 60,000 | 50,000 | 60,000 | 없음 | 50,000 | 8,000 | 자체매설 |
| ◎◎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6,000 | ♣♣♣♣♣클럽 |
| ◇◇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6,000 | ♣♣♣♣♣클럽 |
| ◆◆ | 57,625 | 44,000 | 57,625 | 39,750 | 57,625 | 15,725 | ◆◆기업 |
| □□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9,100 | ♠♠♠♠♠(주) |
| ■ ■ ■ ■ | 63,000 | 52,500 | 63,000 | 없음 | 63,000 | 15,750 | ♥♥엔지니어링 |
| △△ | 60,000 | 50,000 | 60,000 | 50,000 | 50,000 | 7,273 | ♥♥이엔지 |
| ▲▲▲▲ | 37,000 | 23,000 | 37,000 | 23,000 | 37,000 | 10,000 | ♠♠♠♠♠(주) |
| ▽▽▽▽ | 89,120 | 47,180 | 89,120 | 47,180 | 89,120 | 5,030 | ♣♣♣♣♣개발㈜ |
| ▼▼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9,000 | ♠♠♠♠♠(주) |
| ◁◁ | 60,000 | 50,000 | 60,000 | 50,000 | 50,000 | 8,000 | 자체매설 |
| 최고, 최저 단가 차액 | 52,120 | 29,500 | 52,120 | 27,000 | 52,120 | 11,970 | |

※ 각 지역본부별 2018년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에 재료비 산출 현황 자료 재구성

나. 동일업체별 지적기준점 재료비 산출 현황

동일업체별 재료비 산출 현황을 검토한 결과 [표 2]와 같이 ♣♣♣♣♣클럽은 지적도근점 철제(황동)의 경우 ▲▲지역본부와 ◎◎ 및 ♣♣지역본부는 1,000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하였으며, ♠♠♠♠♠(주)는 지적삼각점, 지적삼각보조점 및

지적도근점 표석은 10,500원, 지적삼각점, 지작삼각보조점 반석은 20,000원, 지적도근점 철제(황동)은 900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하였고, ♠♠♠♠♠♠(주)의 각각의 재료비가 최대 20,000원(187.0%), 최저 10,500원(132.4%)의 차이가 발생하였다.

[표 2] 2018년 지적기준점 매설에 따른 동일업체별 재료비 산출 현황

(금액단위: 원)

| 매설업체 | 기관 | 지적삼각점 | | 지적삼각보조점 | | 지적도근점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표석 | 반석 | 표석 | 철제(황동) | 표석 | 철제(황동) |
| ♠♠♠♠♠♠ 클럽 | ○○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7,000 |
| | ◎◎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6,000 |
| | ◇◇ | 49,000 | 44,000 | 49,000 | 37,000 | 49,000 | 16,000 |
| | 증.감 | 0 | 0 | 0 | 0 | 0 | 1,000 |
| ♠♠♠♠♠♠ ♠♠(주) | □□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43,000 | 47,500 | 9,100 |
| | ▲▲▲▲ | 37,000 | 23,000 | 37,000 | 23,000 | 37,000 | 10,000 |
| | 증.감 | 10,500 | 20,000 | 10,500 | 20,000 | 10,500 | 900 |

※ 각 지역본부별 2018년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에 재료비 산출 현황 자료 재구성

위 공사의 ◇◇◇◇실에서는 각 지역본부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에 따른 재료비의 단가를 산출,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별 재료비 산출내역을 공유하는 등 지역별 재료비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.

조치할 사항 ◎◎◎◎◎공사 사장(◇◇◇◇실장)은 지적기준점 매설(설치) 용역에 따른 지적기준점 재료비 산출 내역을 지역본부별로 공유하여 재료비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기준점 매설에 따른 재료비 산출업무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통보)